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11. 3.(화) 16:30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에 한마음 한뜻, 신용회복위-법률구조공단-정부 업무협약 체결

- 총리실, 개인회생·파산 업무 관련 신용회복위-법률구조공단 간 연계 구체화
- 신용회복위는 채무종합상담 및 개인회생·파산 서류 준비, 법률구조공단은 무료 소송구조 등 법률지원 수행
- 기관 간 업무연계 매뉴얼 수립·적용을 통해 위기채무자에 대한 종합적 상담 기회는 높이고, 중복 서류제출 등을 방지하여 국민 부담은 최소화
- 한성숙 국무총리, 업무협약 체결식 참석 기관장 등 면담·격려

□ **국무총리실**은 11월 3일(화), 채이배 비서실장 주재로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은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 등 정부 관계기관과의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일시 / 장소 : 11.3(화) 14:00~15:20 / 정부서울청사 소접견실
■ 참석 기관 : 국무총리비서실(비서실장),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 이번 협약은 위기채무자 발굴부터 이들의 경제적 재기까지 효율적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그간 위기채무자를 위한 구제·지원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위기채무자가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재명 대통령 관련 말씀 >

■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 개인회생·파산 점검 ('26.6.2 국무회의)
■ "법률구조공단 인력 부족 문제 관련 예산 등 지원방안 검토" ('26.8.5 법무부 업무보고)

○ 특히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을 지원하는 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위기채무자가 **적합한 지원제도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신청서류의 준비 및 처리도 **장기간 소요**되어 관계기관 간 **업무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개인회생·파산 업무연계 매뉴얼**』을 수립하고 **협력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1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는 **요구 서류**가 상당히 많은데, 이는 **절차 지연**의 원인이 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업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협약에 의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시스템으로 17종의 **서류를 일괄 발급받음으로써 서류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둘째,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결과물**인 '**신용상담보고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활용**할 수 있게 된 점도 핵심적인 성과다. **기존**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을 수행할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일일이 조사해야 해 **심리에 오랜 시간**(통상 12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공유받은 '신용상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법원 간 신속처리 업무협약」에 따라 **법원 심리 기간이 절반 수준**(약 6개월)으로 **단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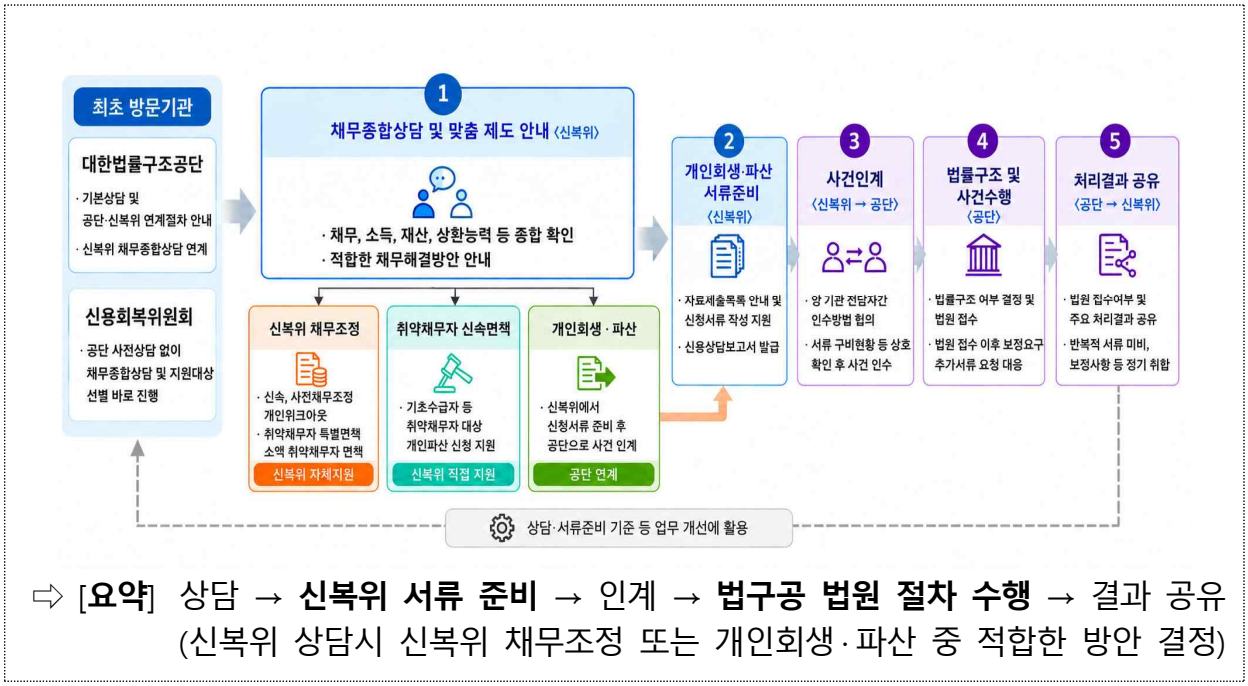
○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상담 및 채무조정과 서류 준비를 담당**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파산 관련 **법원 절차 처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채무자는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 창구로 연결**되어 종합적으로 양 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연계로 업무효율이 높아져 **인력 증대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최초 방문기관이 법률구조공단인 경우 연계절차 안내 후 신용회복위로 인계, 신용회복위는 상담 후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파산 중 적합한 방식 안내

○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위기채무자 지원의 **관문**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위기채무자 지원의 **출구**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

□ 아울러, 양 기관은 지원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과 채무자·임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각 지부에 **전담직원**을 두어 상호 업무연계와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개인회생·파산 업무연계 절차 흐름도 >



⇨ [**요약**] 상담 → **신복위 서류 준비** → 인계 → **법구공 법원 절차 수행** → 결과 공유
(신복위 상담시 신복위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파산 중 적합한 방안 결정)

□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협약은 위기 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위기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가 적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위기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어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후속 면담**도 진행됐다.

○ 한 총리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업무연계 강화를 환영**하며, **기관 이기주의 없이 칸막이 행정을 극복한 훌륭한 협업 사례**라고 양 기관에 **사의를 표하고 격려**하면서,

○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면서, “**위기채무자가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 국무총리비서실은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간의 **업무연계** 방안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협약서(전문)
2. 위기채무자 지원제도 안내문



담당 부서 <총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	책임자	과 장 민성호 (044-200-2812)
		담당자	사무관 우현준 (02-2100-2192)
담당 부서	법무부 인권구조과	책임자	과 장 반 지 (02-2110-4252)
		담당자	사무관 오승진 (02-2110-3643)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책임자	과 장 오유정 (02-2100-2610)
		담당자	사무관 목정민 (02-2100-2613)
담당 부서	신용회복위원회	책임자	부 장 정종식 (02-750-1171)
		담당자	팀 장 도현호 (02-750-1075)
담당 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책임자	부 장 석휘상 (054-810-1061)
		담당자	계 장 이은미 (054-810-1065)

붙임 1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협약서**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 무 협 약 서

국무총리실, 법무부, 금융위원회(이하 '정부'),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양 기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채무자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개인회생·파산 등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기채무자 발굴부터 이들의 경제적 재기까지 효율적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1. 개인회생·파산 관련 업무연계
2. 위기채무자 발굴과 지원절차 효율화
3. 자료 및 진행상황 공유와 이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의 연동 등 고도화
4. 대국민 홍보활동 및 제도 안내
5. 양 기관 지부 간 연락체계 구축 및 상호 교류 활성화
6. 기타 위기채무자 지원을 위해 양 기관이 합의한 사항

제3조(개인회생·파산 업무연계 매뉴얼의 수립 등)

1. 양 기관은 본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개인회생·파산 업무연계 매뉴얼」을 수립하고,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 시행한다.

2. 양 기관은 「개인회생·파산 업무연계 매뉴얼」 수립 즉시 각 지부에 배포하여 현장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양 기관은「개인회생·파산 업무연계 매뉴얼」의 배포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전담직원 운영)

1. 양 기관은 체계적인 업무연계를 위하여 각 지부에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2. 양 기관은 전담직원의 세부 업무수행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운영 현황을 관리한다.

제5조(교육 지원) 양 기관은 채무자의 이해 증진과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기채무자 지원 제도와 관련한 교육을 상호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6조(정부의 지원사항)

1.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 현황을 월 1회 정부와 공유한다.
2. 국무총리실은 협약기관 간 협력내용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위기채무자 지원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행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제7조(비밀유지 의무) 협약기관은 업무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본 협약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제8조(협약의 효력 및 변경 등)

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변경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2년 연장된다.
2. 본 협약의 내용은 협약기관 간 서면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3.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기관의 명칭, 책임자, 조직 구성 등과 관련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4.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5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협약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11월 3일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 무 부

금 융 위 원 회

국 무 총 리 실

붙임 2 **위기채무자 지원제도 안내문**

구분	홍보 내용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
구조공단

빚때문에
힘드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

법률지원 안내

지원 대상
채무로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 절차가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지원 방법
법률지원에 필요한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은 **모두 무료!**

지원 내용
-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 **법률상담**
- 신청자격·절차안내
- 개인회생·파산신청 등 **법적 절차 무료 지원**
- **불법추심 피해** 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상담 예약
- 홈페이지 www.klac.or.kr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카카오톡 채널

방문상담 예약 바로가기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안내

기관명	주소	담당지역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9층 (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	서울 전지역
의정부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의정부시 문충로 116, 5층 501호, 502호 (고산동, 유인더프라임)	의정부 관할 전지역 (철원군 포함)
인천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388, 2층 204호 (유니스프라자)	인천 관할 전지역
수원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4, 3층 (원천동, 행복프라자)	수원 관할 전지역
춘천지부	춘천시 공지로 293, 3층 (효자동, 화남빌딩)	강원 전지역 (철원군 제외)
대전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대전 서구 둔산북로 121, 3층 308호 (둔산동, 에너스빌)	대전, 충남 전지역
청주지부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18, 602호 (산남동, 뉴월드프라자)	충북 전지역
대구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역 우방 유쉘메디치 5층 501호	대구, 경북 전지역
부산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2층 (거제동, 롯제스티동주빌딩)	부산 전지역
울산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31, 2층 201호 (옥동, 울산법조빌딩)	울산 관할 전지역
창원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창원 성산구 가양로124번길 4, 4층 (401호)	경남 전지역
광주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3, 2층 (지산동)	광주, 전남 전지역
전주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전주 덕진구 만성로 120 노티나무빌딩 3층(301~305호)	전북 전지역
제주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제주시 이도이동 1066-4, 5층 502호	제주 전지역